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항 사용 일시정지 근거 마련 〉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320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220832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이착륙장 사용 정지(안 제132조 등)	3
가. 검토의견	4
나. 국토교통부 의견	7

□ 정일영의원 대표발의(22083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일영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2. 21.
3. 회 부 일 : 2025. 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이착륙장 사용 정지(안 제132조 등)

현행	개정안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 ⑦ (생략)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u>운용</u> 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⑧ ----- ----- ----- ----- ----- ----- ----- <u>운용 및 이착륙장 사용을</u> ----- ----- ----- ----- -----.
⑨ (생략)	⑨ (현행과 같음)
제1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6조(과태료) ① -----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정지, <u>운용정지</u> 또는 업무정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	13. ----- <u>운용정지, 사용정지</u> ----- -----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지난 2024년 12월 29일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은 무안공항에 착륙기어 장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동체 착륙하였고, 활주 중 활주로를 초과하였으며, 방위각(Localizer¹⁾) 시설물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항공기가 전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²⁾

또한,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한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점검 결과 활주로 근처에 설치되는 방위각 시설과

1)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활주로와 기체의 방향각 측정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2)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해외 전문가들 "특이 공항설계 많이 봤지만 최악"(종합), 2024.12.3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31024851071?input=1195m>

그 기초대에 대해서 총 7개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콘크리트 기초 등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

-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은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의 항행안전시설 4종*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 방위각시설(LLZ), 활공각시설(GP), 거리측정시설(DME) 및 전방향표지시설(VOR)
 - 특별점검 결과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무안공항을 포함하여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콘크리트 둔덕) 광주공항 1개소, 여수공항 1개소, 포항경주공항 1개소, 무안국제공항 1개소 (콘크리트 기초) 김해국제공항 2개소, 사천공항 2개소 / (H형 철골 구조) 제주국제공항 1개소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이처럼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련하여 현재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44조³⁾에 근거하여 활주로의 운영을 폐쇄하고

3)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44조(활주로 운영 중단 또는 폐쇄) ① 활주로 운영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쇄 절차는 공항운영자와 항공교통업무기관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협력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절차의 조정은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역할과 책임

있으나, 법률에는 국가가 공항 또는 활주로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⁴⁾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항 또는 활주로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이착륙장⁵⁾”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착륙장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2. 정보의 공표 방법 및 활주로 운영 권고 조항

② 활주로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 간의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공항운영자는 일시적 운영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른 기관 및 활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 또는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폐쇄 및 운영 재개에 대한 결정을 하며,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폐쇄 및 재개를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활주로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여 하루 중 또는 연중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항시설법」 제3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항시설의 사용을 휴지·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132조에서 항공안전 활동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 중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 항공기의 운항을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 운영 중단·폐쇄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공항시설법」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폐지·재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는 공항시설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다.

5)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이착륙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착륙장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곳으로, 공항과는 차이가 있어 비행장⁶⁾ 등의 용어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공항 또는 활주로의 사용정지 등은 공항시설과 관련된 내용임으로 이를 「공항시설법」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현재 활주로 운영 중단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항안전운영기준」도 「공항시설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에 사용된 “이착륙장”은 「공항시설법」에 따를 때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관련 개념이므로, 항공기를 포함하는 ‘비행장’으로 용어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80

6)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